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(2011. 11. 14.)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(1 개월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공시사유 발생일: 2011 년 11 월 12 일

공시사항:

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2 개 펀드

펀드명	협회표준코드	원본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	비고
피델리티퇴직연금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종류 CP	KR5235850801	4,760,889	4,037,013	847.95	
피델리티퇴직연금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종류 N	KR5235841537	1,320,935,535	1,122,543,335	849.81	

* 종류형펀드는 운용(통합)클래스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.

* 모자형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어도 관련 모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이면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모자형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이어도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.

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마이클 리드